

UN 環境開發會議 그 뒤의 國際動向

지난 6월초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UN 환경개발회의(UNCED) 이후 이 회의에서 논의된 의제에 대한 각국의 대응조치가 현재 주목을 끌고 있다. 그러나 이 문제는 나라마다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어, 구미 각국에서는 이제 겨우 구체적인 검토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. UNCED 이후 1. UNCED의 後續措置 2. CO₂의 배출규제대책 3. 환경기본법 등을 중심으로 한 각국의 최근 동향을 外紙(日本 電氣新聞 8月27日)에서 간추려 소개한다.

美 國

1. UNCED의 후속조치를 위하여 백악관과 국무성, 환경청, 에너지성, 농무성 등의 각료급과 실무급의 관계자회의를 설치했으나, 구체적인 검토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. 부시 정권이 금년 가을까지 작성하기로 한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 행동계획에 대한 검토도 대통령선거 전에 논의될 전망이 없어 연내에 작성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인식이다.

2. 미국은 온실효과가스 배출의 포괄적인 안정화대책을 주장하고 있다. 이 때문에 그들은 프레온가스 사용의 삭감, 삼림의 조성 등

문제사항마다 定量的으로 배출삭감 및 흡수량을 담은 행동계획을 책정하고 있다. 앞으로 각국에 대하여도 排出源, 吸收源의 특별지정과 삭감수단 및 목표와의 관계 등을 포함한 국가별 연구의 책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. CO₂稅의 설치에 대하여는 경제관계와 稅制上の 체계문제 등으로 도입에 반대하는 처지에 있다.

3. 大氣淨化法 등 환경관련법의 上位法으로서 국가환경정책법(NEPA)이 있으나, 이 법은 조직에 관한 규정이 중심으로 되어 있어 소위 기본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.

EC

1. UNCED 전체의 평가, 그리고 EC로서 이에 대응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議題21의 유럽관을 작성하는 방향으로, 현재 사무적인 작업을 시작했다. 대응책은 농업, 운수,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으며, 생활양식의 변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, 사무적인 검토결과가 취합되는 것은 빨라도 12월말이 될 전망이다.

2. CO₂稅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다른 선진국과의 산업경쟁력의 문제, 과세대상 에너지의 결정

문제 등으로 EC 회원국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. 또한 금년 후반에 EC 의장국이 될 영국이 이 제도의 도입에 소극적이어서 세계의 도입에 관한 EC案이 연내에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, 내년도 도입에도 상당한 어려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 현재의 EC 위원회案에서는 CO₂稅의 도입에는 미국, 日本 등 다른 OECD 국가의 도입이 전제조건으로 되어 있다.

EC로서는 CO₂ 이외의 전력에 있어서의 연료전환, 운수부문에 대한 배기가스의 규제, 연료의 효율 향상 등을 비롯한 에너지절약에 대한 정책을 검토중에 있으나, CO₂稅의 도입 없이는 2000년에 있어서 1990년 수준의 CO₂ 배출량의 안정화는 곤란할 것으로 보고 있다.

3. 프랑스에는 환경기본법에 해당하는 법률은 없다. 환경관련분야의 법규를 모은 「環境法典」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, 10월의 국회에 제출하기에는 시간적으로 곤란할 뿐 아니라 실무자급에서는 지구환경대책의 정책체계를 정리하여, 그것을 홍보함으로써 끝낼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.

영국에서는 대기오염, 토양오염, 폐기물대책 등 재래형 공해대책을 총괄한 환경보호법을 90년에 제정했다. 독일에서는 연방 환경성의 의뢰와 협력으로 토리에대학의 교수가 환경보호 기본법안을 작성하여 지난 7월에 환경장관에게 제출했으나 그 뒤의 움직임은 없다.■